

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표준화, 인증, 계량,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 분야 양해각서

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(이하 <당사국>이라 칭함)는,
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고,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적 협력
강화를 염원하며,
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표준화, 인증, 계량,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 분야
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킴을 기원하며,
그러한 협력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, 무역을 활성화하며, 두 국가
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원함을 인지하며,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조

각 당사국은 본 양해각서의 규정과 양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평등과
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표준화, 인증, 계량,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 분야의
협력을 추구한다.

제2조

본 양해각서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(1) 표준화, 인증 계량,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
방문 및 교환
- (2) 관련 기술자료 및 요청된 자료의 교환

- (3) 국제 및 지역기구 체계 내에서의 협력
- (4) 상호 관심 관심분야에서의 회의뿐만 아니라 경험 교환, 교육훈련, 전시회 및 학동세미나를 위한 행사 지원
- (5) 향후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표준화, 인증, 계량, 적합성평가, 기술규제 및 인정 노력의 선언된 결과 인식
- (6) 두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기타 추가적 측면

제3조

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대로 부담한다. 이러한 활동은 각 국가의 적절한 자금 및 인력의 가용성에 따라 수행된다.

제4조

1.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도출된 정보는 다른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으로 한쪽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.
2.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의 과정 중 당사국에 의해 교환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들은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.

제5조

본 양해각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다음과 같다.

- 대한민국의 국가기술표준원(KATS)
 -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메니스탄 표준청(Turkmenstandartlary)
- 각 당사국은 위에서 언급된 당사국의 관할 당국의 명칭이나 기능이 수정되는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상호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

본 양해각서의 조항은 당사국이 회원으로 있는 다른 국제적 협정 하에서의 당사국의 권한이나 책무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.

제7조

본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국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.

제8조

본 양해각서는 당사국의 새로운 기관이 서명자와 동일한 책임을 맡을 경우에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한 변경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.

제9조

본 양해각서는 당사국간 상호 동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.

제10조

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국의 서명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.

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, 달리 개정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.

본 양해각서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최소 6개월 전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.

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종료 전에 개시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 및 프로젝트의 유효성이나 협력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본 양해각서는 2019년 4월 16일 아슈하바트에서 한국어, 투르크메니스탄어 및 영어로 서명하였으며, 모든 문구는 동일하게 유효하다.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성 칭 모

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

위하여

